

MCPS 규정/Regulation JHC-RA
교직원 형사상의 체포, 구형, 범죄 소송 처분 자가 신고 양식
/Staff Self-Reporting of Arrests, Criminal Charges, and Convictions

개요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MCPS)는 모든 교직원과 학생에게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업무와 학습환경 조성을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교육구로써, MCPS 는 교직원이 제일 높은 수준의 윤리와 도덕 기준을 유지하고 우리 지역사회 아이들을 보호하고 돌보는 책임을 맡은 공무원으로서 연방, 주, 카운티 법을 준수하기를 기대합니다. 새롭게 고용된 모든 고용자는 오랫동안, MCPS 고용조건으로의 범죄 신원조회가 의무화되어 있으며, Maryland 법은 카운티 교육위원회에 범죄로 유죄가 결정되거나 유죄를 인정 또는 불항쟁답변의 경우, 이를 알고 고용 또는 계속 고용을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MCPS Employee Code of Conduct](#) 와 [Child Abuse and Neglect Policy](#) 의 결합으로 MCPS 는 모든 교직원에게 주법 하의 특정 항목에서의 체포, 기소, 유죄선고를 자진 신고해야 합니다.

[2017년 7월 24일 갱신된 MCPS Regulation GCC-RA, Staff Self-Reporting of Arrests, Criminal Charges, and Convictions](#) 는 고용인으로 고용된 후, 모든 고용인은 규정에 따라 명시된 모든 범죄의 체포, 기소, 유죄신고, 기타 조치를 학교에 알리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 범죄는 마약이나 규제 약물, 성범죄, 아동 학대와 폭력범죄에 관련된 공격과 관계가 있습니다.

직원은 자신의 체포, 구형, 유죄선고를 Office of Employee Engagement and Labor Relations 의 Department of Compliance and Investigations(DCI)에 사건 후 7일 이내에 보고해야 합니다. 직원이 사건 후 7일 이내에 DCI에 보고를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의 경우, 보고 기간에 예외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직원이 regulation GCC-RA 를 따르도록 돕기 위해, MCPS 는 교직원을 위한 두 가지 자료를 작성하였습니다.

- ❖ **자주 묻는 질문(FREQUENTLY ASKED QUESTIONS)**—이는 교직원에게 직원 으로서의 기대하는 바를 명확하고 쉽게 알리기 위해 준비된 안내입니다. GCC-RA 자진 보고에 관한 서류는 [이곳](#) 또는 MPCPS 웹사이트 www.montgomeryschoolsmd.org 에서 자진 보고, self-reporting regulation or GCC-RA 를 찾아봅시다.
- ❖ 이 요건충족을 위한 **자진 보고 양식(SELF-REPORTING FORM)**—[MCPS Form 230-41](#) 은 직원 또는 법적 대리인이 작성할 수 있으며 DCI 이메일, selfreport@mcpsmd.org 로 이메일할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양식을 준비했습니다. 양식사용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교육구 직원 또는 법적 대리인은 DCI 에 전화하여 보고할 수도 있습니다. (전화:240-314-4899) DCI 에 제공하는 정보는 비공개 파일로 비밀을 유지합니다.

규정에 따른 체포, 구형, 유죄선고를 보고하지 않은 직원은 일반 계약과 정당한 법 절차에 따라 최대 해고를 포함한 징계조치를 받게 됩니다. 알아두셔야 할 것은 자진 요건은 주법으로 요구하는 다른 보고를 대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MCPS 웹사이트에 준비되어 있는 질문 외의 질문은 DCI 로 연락합시다.